

노 사 합 의 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조합원의 희망을 반영하고 직원들의 새로운 인생설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회에 한해 특별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회사는 2009.12.31자로 2009년 4분기 정기 명예퇴직을 대신하여 동일자 특별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 단, 전직지원휴직은 시행하지 않는다.
2. 특별 명예퇴직은 근속 15년 이상으로 하되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3. 금번 특별 명예퇴직자에 대해 연봉제 직원은 명예퇴직금의 40%, P급(구3급) 호봉제 직원은 명예퇴직금의 50%, S급(구4급) 이하 직원은 명예퇴직금의 62%를 명예퇴직금에 추가 지급한다.
 - 명예퇴직금은 '기준임금 × 최대 24개월'로 한다.

※ 기준임금 : 기준연봉(기본급), 초과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초과가산금 제외), 성과급(440%), 임금보전성과급, 효도휴가비, 급식통근비(25만원)

※ 개월수 산출

- 정년퇴직일 5년이내 : 잔여월수 매 4월당 1개월
- 정년퇴직일 5년초과~10년 : 잔여월수 매 7월당 1개월
(다만 잔여월수 계산시 7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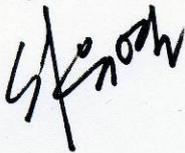
4. 본 합의서는 종사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명예퇴직 공고 직전에 공개한다.

2009.12.9.

주식회사 케이티

GSS 부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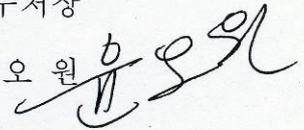
서 유 열



KT노동조합

사무처장

윤 오 원



2009년 특별명예퇴직 설명자료

2009.12.09(수)

■ 추진배경

-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들의 새로운 인생설계의 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 명예퇴직 대상자의 근속년수를 확대하고, 특별명예퇴직금을 대폭 인상하는 수준으로 한시적인 특별명예퇴직을 시행하게 되었음

■ 신청대상 및 퇴직 발령일

- 신청대상 : 근속 15년 이상
 - 단,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자는 제외
- 퇴직발령일 : 2009년 12월 31일자
 - 2009년 4분기 정기 명예퇴직을 대신하며
 - 전직지원휴직은 시행하지 않음

■ 특별 명예퇴직금 산출 기준

- 특별 명예퇴직금 지급액 : $\text{기준임금} \times \text{잔여월수} \times \text{가산율}$

-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준연봉(기본급), 성과급, 임금보전성과급, 효도휴가비, 초과근무수당, 급식통근보조비

- ※ (구)KTF
 - 기본급,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명절급여, 급식보조비

- 잔여월수 : 최대 24개월
 - 정년퇴직일 5년 이내 : 잔여월수 매 4월당 1개월
 - 정년퇴직일 5년 초과 ~ 10년까지 : 잔여월수 매 7월당 1개월
 - 단, 잔여월수 계산시 7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
- ※ 기준임금의 24개월 분은 기본급의 45개월과 비슷한 수준

<잔여월수 산출 조건표>

[단위: 월]

정년잔여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산출월수	3	4	4	4	4	5	5	5	5	6	6	6	6
정년잔여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산출월수	7	7	7	7	8	8	8	8	9	9	9	9	10
정년잔여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산출월수	10	10	10	11	11	11	11	12	12	12	12	13	13
정년잔여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산출월수	13	13	14	14	14	14	15	15	15	15	16	16	16
정년잔여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산출월수	16	16	16	16	17	17	17	17	17	17	17	18	18
정년잔여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산출월수	18	18	18	18	18	19	19	19	19	19	19	19	20
정년잔여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산출월수	20	20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1
정년잔여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산출월수	22	22	22	22	22	22	22	23	23	23	23	23	23
정년잔여	116	117	118	119	120								
산출월수	23	24	24	24	24								

○ 가산율

연봉제 직원(구KTF 직원 포함)	명예 퇴직금의 40%
P밴드(구3급) 호봉제 직원	명예 퇴직금의 50%
S밴드(구4급) 이하 직원	명예 퇴직금의 62%

퇴직소득세액 계산 사례



조건 20년 근속, 법정퇴직금 5천만원, 명예퇴직금 1.5억원

→ 퇴직 소득세 : 480만원

(단위 : 만원)

구분	법정퇴직금 (10년6월)	명예퇴직금 (20년)	계	비고
퇴직금①	5,000	15,000	20,000	
소득 공제 (-) ②	기본	2,250	6,750	① X 45%
	근속	480	320	* 근속공제 한도액 : 800만원 → 20년(1,200) - 중간정산10년(400)
	소계	2,730	7,070	
과세표준③	2,270	7,930	10,200	① - ②
연평균과표④	207	397	604	③ ÷ 근속년수
연평균산출세액⑤	13	24	37	④ X 6%
산출세액⑥	143	480	623	⑤ X 근속년수
퇴직소득 세액공제⑦	43	144	187	⑥ X 30%
납부(결정)세액⑧	100	336	436	⑥ - ⑦
주민세⑨	10	34	44	⑧ X 10%
납부액	110	370	480	⑧ + ⑨

※ 소득 세율표

종합 소득세율		근속연수 퇴직 소득공제금액	
12백만원이하	6%	5년이하	30만원 X 근속년수
12~46백만원	72만원 + 16%	6~10년	150만원 + 50만원 X (근속년수-5년)
46~88백만원	616만원 + 25%	11~20년	400만원 + 80만원 X (근속년수-10년)
88백만원 초과	1,666만원 + 35%	20년초과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년수-20년)

실업급여 수급안내

- 수급대상 :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에 의한 퇴직자
 ※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참조」

- 실업급여수급 : 보험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 1일 수급액: 일 평균 임금의 50%(최고 40,000원)
 - 수급일수

구 분	6월~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고용보험 불입: 1995. 1. 1. 부터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 ☎1350)를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 매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신고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신청기간

- 본인이 퇴직 후 익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음
- 회사에서는 피보험자자격상실(이직)신고서를 퇴직금 지급시기에 제출
 - 피보험자 자격상실(이직)신고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 신고 완료
 - 다만,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월(수급기간)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실업급여인정신청서, 주민등록증, 본인명의 통장계좌번호

□ 제한조건

- 퇴직금 총액 1억원 이상의 금품(임금은 제외)을 수령한 분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 수급이 유예
 (고용보험법 제45조의 2, 동법시행령 제562의 2)
-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한 경우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할 경우
 (자영업 포함)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http://edi.work.go.kr/>)를 참고